**중국내 재직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규정 관련 안내**

중국정부는 2010년 10월 28일에 국가 주석 령 제35호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을 반포하여 올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97조에는 "중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 법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다만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내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여 6월 10일부터 17일 까지 의견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정할 것입니다.

중국한국상회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사회보험 가입문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여 회원 및 한국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본회 **기업경영 자문고문인 (주)엠케이차이나**에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주재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과 시사점**

**1.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관련 규정의 변화**

|  |
| --- |
|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이 발표 및 시행되면, 중국 경내에서 취업수속을 진행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 제97조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이슈화되었으나, 이 조항이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사회보험법> 제97조*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 법 규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지난 6월 10일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의견수렴안)>(이하 <임시방법>, 첨부자료 확인)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의 논란이 종식되고, 중국정부가 외국인 취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 분명해졌다.

다만, 상기 <임시방법>은 의견수렴의 단계를 거쳐 현재 최종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해당 방법의 발표 및 시행시기가 아직은 불투명하다.

**2. <임시방법>의 내용요약**

|  |
| --- |
| *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중국 경내에서 취업수속을 처리하고 근무하는 외국인** * **사회보험 가입종류: 5대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 **한국-중국간 “양로보험-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중국에서 “양로보험”가입은 면제받을 수 있음.** |

**■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대상**

중국에서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서 수속을 마치고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비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의 조직에 채용된 외국인

(2) 경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경내에 등록 또는 등기된 분지기구, 대표기구(이하 “경내 근무단위”로 약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따라서, 중국 현지에서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연락사무소)，로컬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한국 회사에서 파견하여 중국법인 등에서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등 취업증명 수속을 밟고 근무하는 외국인은 모두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된다.

**■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종류**

5대 사회보험인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용단위인 회사가 회사부담분을, 피고용인인 외국인이 개인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와 직원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 한국인의 “양로보험” 가입 면제협정**

한국의 경우에는 2003년 중국과 “양로보험-국민연금 상호 면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동 협정이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임시방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시방법> 제9조의 상호면제협정 조항에 의거하여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행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하면 중국에서의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의 가입은 면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중국 현지채용 등의 형식으로 취업하여 한국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발급받아 중국 사회보험 관리기구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로보험”의 가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 외국인의 사회보험 관리방법**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한국인의 사회보험 납부와 대응방안**

|  |
| --- |
|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하여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아, 직원 개인과 회사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

<임시방법>이 확정 발표되면 중국 경내에서 취업수속을 밟고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사회보험료의 부담의무는 가중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의 향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취업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비용부담만 증가하는 악화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유효한 대처방안은 앞서 살펴본 “양로보험-국민연금 상호면제 협정”에 의거하여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는 것이다.

가장 보험료 부담이 높은 양로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양로보험대우를 누리기 위해 15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양로금을 수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양로보험료는 귀국 시에 반환 받을 수 밖에 없고 반환 받는 것도 개인납부금액에 해당하는 8%뿐이다.

따라서 양로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해서 면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하다.

**■ 한국에서 급여소득이 있는 자**

한국에서 급여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사업장가입자)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발급받아 중국에 제출하여 양로보험을 면제받는다.

**■ 한국에서 급여소득이 없는 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최소 보험료 월 89,100원, 개인이 전액부담)로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제출하여 양로보험을 면제받는다.

한편, 한국에서 급여소득이 있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할 경우, 한국에서 급여소득 있음이 추정될 수 있다. 만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세무기관과 사회보험 징수기구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합산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로보험 가입면제 혜택의 향유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을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급여신고 원칙 및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제공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2011. 7.21. **/끝/**

**[첨부자료]**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의견수렴안)**

제1조 [목적 및 근거]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보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인 입국취업] 중국 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이란 법에 따라 <외국인 취업증>,<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서를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비중국 국적의 인원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국 경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이하 “사용단위”로 약칭)이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경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경내에 등록 또는 등기된 분지기구, 대표기구(이하 “경내 근무단위”로 약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하여 직원 기본양로보험, 직원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경내근무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한다.

제4조 [보험가입등기] 사용단위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경외 고용주가 파견하여 경내 근무단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경내 근무단위가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중국에서 정한 양로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는 경우, 개인계좌에 유보할 수 있고 다시 중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개인 계좌의 예금액을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불하고 직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지할 수 있다.

제6조 [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직원 기본양로보험의 개인계좌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제7조 [경외 생존인증] 중국 경외에서 월간 단위로 사회보험 대우의 수령을 향유하는 외국인은 매년 그 대우 지불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보험 처리기구에 중국대사관, 영사관이 발급한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가 유관기관이 공증하고 중국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1회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험 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외국인에게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존증명의 제출을 적절한 시기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분쟁처리] 법에 의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간에 사회보험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화해신청, 중재, 제소할 수있다. 사용단위 또는 경내 근무단위가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 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 징수기구에 합법적인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상호면제협정] 중국과 사회보험 양자 또는 다자협의를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지닌 인원이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 사회보험 가입방법은 협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편제규칙>에 따라 외국인의 사회보장번호를 구축하고 사회보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홍콩/마카오/대만 인원의 가입]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과 대만지역의 주민(이하 “홍콩/마카오/대만 인원”으로 약칭)이 내륙에서 취업하는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홍콩/마카오/대만인원 사회보장번호 편제규칙>에 의거하여 홍콩/마카오/대만 인원의 사회보장번호를 구축하고 사회보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시행일시] 본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